

---

# 식품진흥기금

---

## 식품안전과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6,775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337개소		
사업목적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등급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품위생법	① 제47조의2 제1항 ② 제89조 제3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김포맛집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1,000	35,000	35,000	0	0	0	35,000	0	
국비	0	0					0	0	
도비	16,400	14,000	14,000	0	0	0	14,000	0	
시비	24,600	21,000	21,000	0	0	0	21,000	0	
기타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5,000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존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 700,000원*50개소 =	35,000	

## □ 예산요구 사유

- 음식점 위생등급제 유효기간(2년) 만료 예정인 지정 음식점에 영업장 청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지정을 제고
- 2022년 김포시에서 첫 시행한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023년 경기도형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채택되어 지속 추진 중
  - ※ 2025년 경기도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 음식점
    - 지원내용 : 업소 내 주방, 후드, 객실 등 청소비 지원(업소당 70만원 한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수립
- 2026. 01. ~ 2026. 12.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 2026. 01. ~ 2026. 12.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사후관리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신규 및 재지정 139개소 / 누계 254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종합청소비) : 54개소 37,066천원
2024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신규 및 재지정 179개소 / 누계 265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종합청소비) : 30개소 20,417천원 ·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업체 용역 계약 : 13,662천원
2025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신규 및 재지정 167개소 / 누계 347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종합청소비) : 39개소 26,92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100	37,066	-	34	
2024	41,000	34,079	-	6,921	
2025	35,000	26,926	-	8,07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장	주일국	담당자	보건7급 최은빈	전화	2238
-----	-------	--------	-----	-----	----------	----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6,775개소		
사업목적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등급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식품위생법	① 제47조의2 제1항 ② 제89조 제3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포맛집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000	20,000	0	0	0	20,000	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0	20,000	20,000	0	0	0	20,000	0	
기타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음식점 위생등급제 희망업소(지정·재지정) 컨설팅 지원 : 400,000원*50개소 =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하고, 등급을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위생이 우수한 음식점을 알리고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으로 신규 지정업소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 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9.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 2026. 01. ~ 2026. 12.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 컨설팅 업체 용역 계약 : (주)세스코, 19,750천원(선급금 지급 : 11,850천원) - 식품접객업소 50개소 컨설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	11,850	-	8,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장 주일국	담당자	보건7급 최은빈	전화	2238
-----	-------	------------	-----	----------	----	------

# 김포맛집 지정 및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6,775개소		
사업목적	김포맛집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외식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위임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포맛집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500	33,479	56,000	20,000	0	-42,521	56,000	22,521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29,500	33,479	56,000	20,000	0	-42,521	56,000	22,521	
기타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6,000	
김포맛집 지정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맛집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사수당 : 60,000원*10명*10일 = 6,000</li> <li>· 김포맛집 심사용 시식비 : 200,000원*20개소 = 4,000</li> <li>· 김포맛집 표지판 제작 : 300,000원*5개소 = 1,500</li> <li>· 김포맛집 신규지정업소 홍보용 사진촬영비 : 300,000원*5개소 = 1,500</li> <li>· 김포맛집 이벤트 리플렛 제작 및 경품 구입 : 3,500,000원*2회 = 7,000</li> <li>· 김포맛집 전자카탈로그 등 홍보물품 제작 : 2,500,000원*4종 = 10,000</li> <li>· 기존김포맛집 위생용품 지원 500,000원*45개소 = 22,500</li> <li>· 신규지정업소 홍보물품 지원 700,000원*5개소 = 3,500</li> </ul>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만의 차별화된 음식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김포맛집’을 지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존 김포맛집 지정업소에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신규 지정업소에는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과 참여 활성화를 촉진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맛집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5년 김포맛집축제 행사운영비를 당초 편성하였으나, 산불재난으로 금년도 축제는 부득이하게 취소
- 최근 축제 운영 준비과정에서 참여 업소간 형평성 문제, 재난 및 계절적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고려사항이 확인되어, 단기적 대외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자영업자 지원 중심의 방향전환 필요성 제기됨
- 이에 축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김포맛집 지정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물품 지원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조정하고자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년 운영 계획 수립
  - 2026. 02. ~ 2026. 06. : 김포맛집 신규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심사
  - 2026. 07. ~ 2026. 12. : 김포맛집 지정업소 홍보 및 물품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 김포맛집 신규지정 13개소 - 김포맛집 지정에 소비자평가위원으로만 심사위원단 구성 - 신규지정 후보업소 선호도 온라인 설문조사 : 2회 - 김포맛집 스탬프 투어이벤트 : 1회 - 김포맛집 홍보물품(달력, 전자카탈로그, 홍보책자, 리플렛) 제작 및 배부 : 13,971개
2025	· 김포맛집 신규지정 6개소 - 김포맛집 지정에 소비자평가위원으로만 심사위원단 구성 - 신규지정 후보업소 선호도 온라인 설문조사 : 1회 - 김포맛집 스탬프 투어이벤트 : 1회 - 김포맛집 홍보물품(전자카탈로그, 리플렛, POP) 제작 및 배부 : 8,100개 · 김포맛집 축제 취소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업소 지원(산불 재난으로 인하여 맛집 축제 취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9,500	29,418	-	82	
2025	33,479	25,656	-	7,82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장	주일국	담당자	보건7급 최은빈	전화	2238
-----	-------	--------	-----	-----	----------	----	------

# 식품안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2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80개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6명		
사업목적	-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 - 식품위생업소에 홍보 및 계몽 활동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② 식품위생법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④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① 제4조 ② 제89조 제3항 ③ 제18조제5항 ④ 제7조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시장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4,100	73,640	73,640	0	0	0	54,000	-19,640	
국비	0	0					0	0	
도비	21,640	29,456	29,456	0	0	0	21,600	-7,856	
시비	32,460	44,184	44,184	0	0	0	32,400	-11,784	
기타	0	0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0	
식품안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개·보수 : 135,000원*20개 = · 보호구역 내 홍보 및 업소 지원용 위생용품 구입 : 15,000원*440개 =	2,700 6,600	도3,720 시5,580
	301-14 기타보상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 50,000원*816일	40,800	도16,320 시24,480
	307-06 보험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150,000원*26명	3,900	도1,560 시2,34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거 학교 앞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개·보수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 조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업소 감시활동에 따른 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 상해 발생 대비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 예산증감 사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감소에 따른 단체상해보험비 및 활동일수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및 활동비 지급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사업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 2026. 04. ~ 2026. 06.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 현황 조사 및 개·보수
- 2026. 09.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2026. 10. ~ 2026. 12. : 사업 집행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개보수 : 20개소</li> <li>·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30개</li>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 및 위생 지원물품 제작 : 식품용 니트릴 위생장갑 1,475개</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 796일</li> <li>· 배달음식점·키즈카페·다중이용업소·족발보쌈업체·무인판매업소·옥외영업 등 지도점검, 위생등급제·김포맛집·식중독 예방 등 홍보</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28명</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개보수 : 21개소</li>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 및 위생 지원물품 제작 : 앞치마 600개, 조리기구 받침대 550개</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 753일</li> <li>· 배달전문·다중이용업소·개식용조리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27명</li> </ul>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개보수 : 21개소</li>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 및 위생 지원물품 제작 : 주걱 300개, 국자 250개, 고무장갑 815개</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 535일</li> <li>· 배달전문·다중이용업소·개식용조리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26명</li> </ul>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950	51,177	-	2,773	
2024	54,100	49,717	-	4,383	
2025	73,640	32,129	-	41,5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장 주일국	담당자	보건7급 김지선 보건9급 이소망	전화	2225 2190
-----	-------	------------	-----	----------------------	----	--------------

# 식품안전주간 홍보

사업기간	2026. 5월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민 및 식품위생영업자		
사업목적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식품안전 의식 고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시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인터넷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000	3,000	0	0	0	2,000	-1,0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0	3,000	3,000	0	0	0	2,000	-1,000	
기타	0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식품안전주간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온라인 소통매체 참여자 상품권 제공 : 5,000원*360명 · 행사 운영 소모품(배너 등) 구입 : 200,000원	= 1,800 = 200	

## □ 예산요구 사유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 5.7.~21.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식품안전유공자 표창을 통해 자긍심 및 식품안전의 중요성 제고
- 식품안전주간 캠페인 및 온라인 이벤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 확산

□ **예산증감 사유**

- 디지털 홍보 채널(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인쇄홍보물 제작보다 SNS·온라인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식품안전주간’ 홍보 계획 수립
- 2026. 04. : 온라인 이벤트 기간·내용 안내
- 2026. 05. : ‘식품안전주간’ 홍보 실시(캠페인, 언론보도, SNS 등)  
온라인 소통매체 기반 이벤트 진행 추첨을 통한 상품권 지급
- 2026. 06.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식품안전 유공자 표창 수여 5명 · 식품안전의 날 기념 온라인 퀴즈 이벤트 진행 참여 7,958명 · 식품안전의 날 기념 홍보물 제작 170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00	2,999	-	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식품산업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7급 강민영	전화	2226
-----	-------	------------	-----	----------	----	------